중앙소방학교 공고 제2017-6호

제23기 소방간부후보생 선발 필기시험 합격자 공고 및 체력시험, 신체검사(변경), 면접시험 등 일정 공고

2017년 제23기 소방간부후보생 선발 필기시험 합격자 및 체력시험, 신체검사(변경), 면접시험 등 일정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2월 1일

중앙소방학교장

1. 필기시험 합격자

가. 합격인원 : 총 68명

구 분	합 계	남 자	여 자
총 원	68	55	13
인문사회계열	35	28	7
자 연 계 열	33	27	6

※ 동점자 추가합격: 4명(인문사회계열: 남자 2, 여자 1, 자연계열: 남자 1)

나. 합격자 명단 : 붙임 1 참고

다. 서류제출 ※ 서류전형 별도 실시

○ 제출일시 : 2017. 2. 7.(화) 09:30 ~ 10:00

○ 제출대상 : 총 68명(필기시험 합격자)

○ 제출서류

① 기본증명서, 자격증 및 면허증(사본) 각 1부

② 영어능력검정시험 성적표 1부 * 원서접수 시 사전 제출한 성적표

③ 자격요건 검증 등을 위한 동의서 1부.

○ 제출방법 : 응시자 본인이 인ㆍ적성검사 등록시 시험운영본부로 제출

라. 합격자 커트라인 ※ 자격증 등 가산점 합산 점수임

구 분	남 자	여 자	비고
인문사회계열	95.20	93.60	
자 연 계 열	80.80	74.60	

2. 필기시험 불합격자 성적안내 (필기시험 합격자 성적은 미공개)

가. 확인기간 : 2017. 2. 1.(수) 14:00 ~ 2. 3.(금) 18:00

나. 공개대상 : 필기시험 불합격자

다. 확인방법 : 원서접수사이트(http://www.119gosi.kr)의 "성적조회"

에서 응시자 개인별 필기시험 성적 확인

※ 웹사이트 이용문의 : ㈜에니아소프트 ☎ 043-219-1320

3. 시험일정 변경

시험구분	시험 일자	시험 장소	합격자 발표
인ㆍ적성검사	'17.2.7(화)	중앙소방학교 (제301호 강의실)	결과 면접위원 제공
제2차 시험(체력시험)	'17.2.7(화)	중앙소방학교 (소방종합훈련센터)	`17.02.10(금)
제3차 시험(신체검사)	소방공무원 채용신체검사서에 맞게 종합병원에서 개인별로 실시 후 면접시험일에 제출(붙임 참고)		`17.03.10(금)
제4차 시험(면접시험)	`17.2.27(월)	중앙소방학교	

4. 인·적성 검사

가. 검사일시 : 2017. 2. 7.(화) 10:00 ~ 11:30

※ 09:30까지 중앙소방학교 제301호 강의실 접수대에 등록완료

나. 검사장소 : 중앙소방학교 제301호 강의실

다. 검사대상 : 총 68명(필기시험 합격자)

라. 검사내용 : 인성 및 적성검사

※ 면접시험 시 인·적성 검사 결과를 면접위원에게 제공

마. 준 비 물 : 응시표, 신분증(주민등록증, 주민등록 발급신청 확인서, 운전

면허증, 기간만료 전 여권)

5. 체력시험

- 가. 시험일시 : 2017. 2. 7.(화) 13:00 ~ 18:00
 - ※ 12:30까지 중앙소방학교 실내체육관 접수대에 등록완료
- 나. 시험장소 : 중앙소방학교 소방종합훈련센터 1층 실내체육관
- 다. 시험대상 : 총 68명(필기시험 합격자)
- 라. 시험종목 : 6종목(악력, 배근력, 앉아윗몸앞으로굽히기, 제자리멀리뛰기, 윗몸일으키기, 왕복오래달리기)
- 마. 준 비 물 : 응시표, 신분증(주민등록증, 주민등록 발급신청 확인서, 운전면허증, 기간만료 전 여권), 상·하의 운동복, 운동화(스파이크 신발 불가)
- 바. 도핑테스트 : 체력시험 응시인원의 7% 무작위 선정 실시
 - ※ 금지약물 발견 시 합격취소 및 형사적 제재 등의 불이익이 있을 수 있음
 - ※ (주의사항) 감기약, 보약 등 약물복용으로 금지약물이 검출되는 사례가 있으므로 응시자는 약물복용에 특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6. 신체검사

- 가. 검사대상 : 필기시험 및 체력시험 합격자
- 나. 검사병원 : 종합병원*(붙임 참고)
 - * 의료법 제3조제2항에 따른 종합병원으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조회가능
- 다. 준 비 물 : 응시표, 신분증, 반명함판(3.5×4.5) 사진 2매, 검사수수료
- 라. 검사방법 : 응시생 본인이 종합병원을 방문하여 소방공무원 채용 신체검사서에 따라 신체검사를 받고 면접시험일 당일 시험운영본부에 신체검사서 제출('17. 2. 27.)
 - ※ **청력**은 반드시 **수치**로 **기재**하고, 적색약, 적녹색약 등 적색이상 판정자는 색각경 검사(아노말로스코프)를 실시 후 '약도, 중등도, 강도' 여부에 대한 **판정결과 기재**
 - ※ 신체검사 및 발급에 3~5일 이상 소요되므로 미리 준비하여 병원 예약 필요
- 마. 검사내용 : 소방공무원 채용 신체검사서에 의함(붙임 참고)
 - ※ (주의사항) 신체검사자의 금식(禁食)에 관한 사항은 해당 종합병원에 문의

7. 유의사항

가. 공통사항

- 응시자는 시험일시, 장소, 교통편 및 이동소요시간 등을 반드시 확인하여야 하며, 공지사항 미열람 및 미숙지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 시험은 기상 상황에 관계없이 예정대로 시행 되며, 천재지변 등 부득이한 경우 별도 공지 합니다.
- 응시자는 시험·검사시작 30분전까지(이후 입장 불가) 시험장에 입장 하여야 하며, 30분전까지 시험장에 입장하지 않거나 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시험응시 포기로 간주됩니다.
- 신분증은 주민등록증, 주민등록 발급신청 확인서, 운전면허증, 기간만료 전 여권만 인정되고 학생증, 자격수첩, 장애인등록증 (복지카드), 공무원증 등은 신분증으로 인정하지 않으며, 신분증 미 지참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의 책임입니다.
- 시험 중 본인의 소지품은 본인이 관리하여야 하며 중앙소방학교 에서는 소지품 분실 등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 제출서류의 허위 사진등록 및 작성, 오기, 누락, 연락불능, 자격 입증서류 미비, 개인정보 불일치 등으로 발생하는 불이익은 응시자 책임이며,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 * 허위 사진등록 등의 경우 향후 5년간 시험응시 제한

나. 체력시험

- 금지약물 복용이나 금지방법 사용 등으로 인한 부정합격 사례를 방지 하기 위하여 체력시험 응시자를 대상으로 도핑테스트를 실시합니다.
- 시험장 내에서는 휴대폰 등을 이용하여 체력시험 장면을 촬영 할 수 없으며, 응시자 이외에는 시험장 출입을 금지합니다.

- 긴장된 상태에서 갑작스런 체력시험 응시로 각종 부상의 위험에 노출될 우려가 있으니 체력시험 실시 전 준비운동을 충분히 하시기 바랍니다. 체력시험 과정에서 본인의 부주의로 인하여 발생한 부상 등에 대하여 중앙소방학교에서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 체력시험 이전이나 실시 중에 본인 부주의로 발생한 부상 등으로 시험에 응시하지 못하거나 불합격하는 경우 체력시험 연기 또는 추가 시행은 없으므로 건강관리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체력시험은 실내에서 실시하므로 미끄럼에 주의하시고, 장갑이나 스파이크 신발 또는 체력시험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보조장구 (기구)는 착용할 수 없습니다.
- 체력시험 중 판정관 및 시험관리관의 지시에 따라야 하며, 허가 없이 무단이석 등으로 시험에 응시하지 못한 경우 추가 시험을 실시하지 않습니다.

다. 신체검사

- 신체검사에 소요되는 모든 비용은 응시자 본인이 부담합니다.
- 소방공무원 채용 신체검사 결과는 반드시 **「소방공무원 채용** 신체검사서」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 * 공무원 채용 신체검사서는 인정하지 않음

♠ 주의사항

- 소방공무원 채용 신체검사서는 종합병원장이 발행한 것으로 제출
 - 보건소, 의원, 한국건강관리협회 등은 종합병원에 해당하지 않음
- 색각 등 이상자는 종합병원장이 발행한 의사진단서(소견서) 첨부
 - 색각 이상자는 진단서(소견서)에 색맹, 적색약, 녹색약 등 구체적으로 기재하여 제출하여야 함
 - * 적색약, 적녹색약 등 적색부분 이상자는 색각경(아노말로스코프)검사를 받고 의사진단서(소견서)에 약도, 중등도, 강도 여부를 표기하여야 함 (예시) 적색약 약도, 녹색약 등
- * "주의사항"에 규정된 사항과 다른 서류를 제출한 응시자는 불합격 처리 될 수 있음

라. 기타사항

- 서류전형, 체력시험 도핑테스트, 신체검사 결과는 따로 공고하지 않으며, 최종 합격자 발표 시 그 결과를 반영하여 공고('17.3.10) 합니다.
- O 기타 자세한 사항은 중앙소방학교 인재채용팀으로 문의 바랍니다.

※ 문의전화(평일 09:00~18:00)

- ◆ 채용시험 문의 : 중앙소방학교 인재채용팀 ☎ 041-550-0961~6 (우편번호: 31068) 충남 천안시 동남구 태조산길 269 중앙소방학교 응급구조교육관 2층
- ◆ 응시표 출력 문의 : ☎ 043-219-1320

붙임: 1. 제23기 소방간부후보생 선발 필기시험 합격자 명단(별첨) 1부.

- 2. 소방공무원 체력시험 종목 및 평가점수표 1부.
- 3. 소방공무원 체력시험 측정방법 1부.
- 4. 소방공무원 채용 체력시험 도핑테스트 안내문 1부.
- 5. 공무원 임용을 위한 체력시험 금지약물 및 금지방법 1부.
- 6. 응시자 치료목적사용 면책신청서 1부.
- 7. 소방공무원 채용시험 신체조건표 1부.
- 8. 소방공무원 신체검사의 불합격 판정기준 1부.
- 9. 소방공무원 채용 신체검사서 1부.
- 10. 중앙소방학교 약도 및 시험장 안내 1부.
- 11. 자격요건 검증 등을 위한 동의서 1부.
- 12. 제23기 소방간부후보생 선발시험 신체검사 종합병원(별첨) 1부.

소방공무원 체력시험 종목 및 평가점수표

<i>⋧</i> ₽	성					평가	점수				
종목	별	1	2	3	4	5	6	7	8	9	10
악력	남	45.3~ 48.0	48.1~ 50.0	50.1~ 51.5	51.6~ 52.8	52.9~ 54.1	54.2~ 55.4	55.5~ 56.7	56.8~ 58.0	58.1~ 59.9	60.0 이상
(kg)	역	27.6~ 28.9	29.0~ 30.2	30.3~ 31.1	31.2~ 31.9	32.0~ 32.9	33.0~ 33.7	33.8~ 34.6	34.7~ 35.7	35.8~ 36.9	37.0 이상
배근력	남	147~ 153	154~ 158	159~ 165	166~ 169	170~ 173	174~ 178	179~ 185	186~ 194	195~ 205	206 이상
(kg)	여	85~ 91	92~ 95	96~ 98	99~ 101	102~ 104	105~ 107	108~ 110	111~ 114	115~ 120	121 이상
앙아 윗몸 앞으로	남	16.1~ 17.3	17.4~ 18.3	18.4~ 19.8	19.9~ 20.6	20.7~ 21.6	21.7~ 22.4	22.5~ 23.2	23.3~ 24.2	24.3~ 25.7	25.8 이상
료으도 굽히기 (cm)	여	19.5~ 20.6	20.7~ 21.6	21.7~ 22.6	22.7~ 23.4	23.5~ 24.8	24.9~ 25.4	25.5~ 26.1	26.2~ 26.7	26.8~ 27.9	28.0 이상
제자리 멀리	남	223~ 231	232~ 236	237~ 239	240~ 242	243~ 245	246~ 249	250~ 254	255~ 257	258~ 262	263 이상
뛰기 (cm)	여	160~ 164	165~ 168	169~ 172	173~ 176	177~ 180	181~ 184	185~ 188	189~ 193	194~ 198	199 이상
윗몸 일으	남	43	44	45	46	47	48	49	50	51	52 이상
키기 (회/분)	여	33	34	35	36	37	38	39	40	41	42 이상
왕 <u>복</u> 오래	남	57~ 59	60~ 61	62~ 63	64~ 67	68~ 71	72~ 74	75	76	77	78 이상
달리기 (회)	여	28	29~ 30	31	32~ 33	34~ 36	37~ 39	40	41	42	43 이상

비고

- 1. 「소방공무원임용령」 제46조제1항제2호에 따라 총점 60점 중 30점 이상 득점자를 합격자로 한다.
- 2. 각 종목별 측정 방법 등은 국민안전처장관이 정한다.

소방공무원 체력시험 측정방법

종 목	측정방법 등
악 력 (kg)	 ○ 측정 장비 : 스메들리(smedley)식 악력계 ○ 측정 단위 : kg ○ 측정 방법: 똑바로 선채로 양발을 적당히 벌려서 기립자세를 취하고 손가락의 제 2관절이 직각이 되도록 악력계를 잡은 다음 폭을 조절해 다시 잡고 좌, 우 교대로 2회씩 측정하여 가장 좋은 기록을 선택한다.
배 근 력 (kg)	 ○ 측정 장비: 배근력계 ○ 측정 단위: kg ○ 측정 방법: 양발을 15cm 정도 벌린 자세로 배근력계 위에 올라서서 상체를 앞으로 약간 기울여 배근력계 손잡이를 잡은 후 배근력계와 상체의 각도가 30°가 되도록 배근력계 손잡이의 높이를 쇠줄로 조절한다. 준비가 되면 전력을 다해 몸을 일으킴으로써 배근력을 측정한다. 2회 실시하여 좋은 기록을 선택한다.
앉아윗몸 앞으로 굽히기 (cm)	 ○ 측정 장비: 앉아윗몸앞으로굽히기 측정대(전자식 측정기 가능), 매트 1개 ○ 측정 단위: cm ○ 측정 방법 - 피검자는 신을 벗고 양 발바닥이 측정기구의 수직면에 완전히 닿도록 하여 무릎을 펴고 바르게 앉는다. 양발 사이의 넓이는 5cm를 넘지 않게 한다. - 양 손바닥은 곧게 펴고 왼손바닥을 오른손 등위에 올려 겹치게 하여 준비 자세를 취한다. - '시작'구호에 따라 상체를 천천히 굽히면서 측정기구의 눈금 아래로 손을 뻗친다. - 보조원은 피검자가 윗몸을 앞으로 굽힐 때 무릎이 굽혀지지 않도록 피검자의 무릎을 가볍게 눌러준다. - 계측원은 피검자의 손가락 끝이 3초 정도 멈춘 지점의 막대자 눈금을 읽어서 기록한다. - 2회 실시하여 좋은 기록을 선택한다. ※ 유의사항: 허리의 반동을 이용하거나 갑작스럽게 상체를 굽혀 손을 뻗쳤을 경우 또는 피검자가 앞으로 굽힐 때 무릎을 굽혔을 경우 재검 사를 실시한다.

종 목	측 정 방 법 등
제자리 멀리뛰기 (cm)	 ○ 측정 장비: 구름판 및 모래터(구름판 위치와 같은 높이로 모래를 정리) 또는 전자식 제자리 멀리뛰기 측정판 ○ 측정 기록: cm ○ 측정 방법: 발 구름판을 넘지 않도록 서서 팔이나 몸, 다리의 반동을 이용하여 뛰며, 발 구름선에서 가장 가까운 착지점(신체의 어느 한 부분)까지 거리를 구름선과 직각으로 측정한다. 2회 실시하여 좋은 기록을 선택한다.
윗몸 일으키기 (회/분)	 ○ 측정 장비: 매트(윗몸일으키기대, 전자식 측정기 사용 가능) ○ 측정 기록: 회 ○ 측정 방법: 양발을 3cm정도 벌리고 무릎을 직각으로 굽혀 세우며 양손은 교차해서 가슴에 대고 손끝이 어깨를 향하게 하여 등을 매트에 대고 누워 상체를 90° 이상 일으킨다. 1분 이내에 실시한 횟수를 측정한다.
왕복오래 달리기 (회)	 측정 장비(전자식 측정기 사용 가능) 최소 길이 20m, 1인당 폭 1m 이상 되는 평평하고 미끄럽지 않은 공간 음량이 적정한 CD 플레이어 또는 카세트플레이어 점증속도에 따라 울리는 신호음이 녹음된 CD 또는 오디오카세트 녹음 CD : 별도 측정 기록 : 단위(회) 측정 방법 20m코스의 양족 끝선에 테이프나 분필로 선을 긋는다. 출발신호원의 '출발' 신호에 맞춰서 출발한다. 먼저 도착한 피검자는 출발자의 '출발' 신호가 다시 울릴 때까지 기다려야 한다. 신호가 울리면 다시 반대쪽 라인 끝을 향해 달린다. 매 분마다 점점 빨라지도록 정해진 속도에 맞추어 20m 거리를 가능한 오래 왕복하여 달린다. 왕복하는 동안 정해진 주기에 따라 속도가 빨라진다. 동시에 출발한 피검자가 신호음이 울릴 때까지 라인에 도달하지 못한 경우 검사는 종료되고 이때까지 달린 20m 거리의 횟수를 기록한다.

비 고 : 본인의 귀책사유가 아닌 사항으로 측정에 문제가 있는 경우(왕복오래달리기 종목의 경우 실수로 넘어진 경우 포함) 그 해당 종목에 한하여 재 측정 기회를 추가적으로 부여할 수 있다.

소방공무원 채용 체력시험 도핑테스트 안내문

□ 도핑테스트 시행안내

 체력시험의 공정성을 확보하고 응시자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시험 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금지약물의 복용 및 금지방법의 사용은 안되며,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이를 확인하기 위한 절차(도핑테스트)를 실시할 수 있습니다.

□ 금지약물 및 금지방법

· 「공무원 임용을 위한 체력시험 금지약물 및 금지방법 고시(인사혁신처 고시 제2014-7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약물 및 방법(별표 참조)은 사용이 금지됩니다.

□ 테스트 대상자 선정방식

• 검사는 스크리닝 검사에서 양성반응자를 대상으로 실시하거나, 무작위로 선정할 수 있습니다.

□ 도핑테스트 절차 등 안내

- 채취된 소변 시료(A, B)는 곧바로 분석기관으로 전달되며, 전달된 시료 중 A시료가 분석되며, B시료는 냉장 보관됩니다.
- · A시료의 분석결과가 시험실시기관에 서면으로 통보됩니다.
- A시료의 분석결과가 비정상분석결과(양성)가 나온 경우, 해당 응시자는 비정상분석결과를 통보받은 후 일정기간 내에 치료목적사용면책 등 의견을 제출하거나, B시료분석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 면책을 신청한 경우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관계 전문가 3인 이상을 포함
 한 치료목적사용면책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의하게 됩니다.
- B시료분석을 요청할 경우, 당사자 혹은 대리인이 분석과정에 참관할 수 있으며, 분석결과가 비정상분석결과(양성)를 확인하지 못할 경우, 음성 으로 최종 판정되지만, B시료 분석결과 역시 비정상분석결과(양성)를 확인 하는 경우, 불합격 결정을 내립니다.
- 불합격 결정에 불복할 경우에는 행정심판, 소송 등을 청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 치료목적사용면책 신청 안내

- (의의) 금지약물 또는 금지방법의 사용이 요구되는 의학적 상태에 있는경우 응시자는 구비서류를 갖추어 치료목적사용면책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신청절차) 응시자는 비정상분석결과(양성)가 나온 경우 별첨의 서식을 작성, 구비서류를 갖추어 별도 지정일까지 신청하여야 합니다.(단, 치료 목적사용면책이 필요했었던 경우에 한함)
- (승인기준) 치료목적사용면책은 다음의 기준을 엄격하게 준수하여 승인합니다.
- ▶ 응시자의 급성 또는 만성의 의료적 상태를 치료하는 과정에서 금지약물이나 금지방법을 사용하지 않았을 경우, 응시자가 건강상 심각한 손상을 입었을 것으로 예상되어야 한다.
- ▶ 금지약물 또는 금지방법의 치료목적의 사용에 따른 합법적인 치료로 인해 정상적인 건강상태로 되돌아갔을 때 예상할 수 있는 것 이상의 추가적인 운동능력 향상효과가 없어야 한다.
- ▶ 금지약물과 금지방법 사용 이외의 다른 합당한 대체 치료가 없어야 한다.

□ 기타 유의사항

- 응시자는 본인의 건강을 보호하고 선의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금지약물 및 금지방법을 사전에 충분히 숙지하여야 합니다.
- 모든 응시자는 도핑테스트 동의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동의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에는 체력시험에 응시할 수 없습니다.
 - ※ 동의서는 체력시험 당일 배부 및 제출
- 응시자는 도핑테스트 결과, 비정상분석결과(양성)가 나온 경우에는 「소방 공무원임용령」 제51조에 따라 합격을 취소하고 향후 5년간 응시자격이 제한됩니다.

공무원 임용을 위한 체력시험 금지약물 및 금지방법

□ 금지약물

- 1. 동화작용제 : 총 7종 및 그 대사물질1)
 - 가. 동화작용남성호르몬스테로이드(AAS)
 - ① 외인성 동화작용남성호르몬 스테로이드(Exogenous AAS)
 - **▶**drostanolone
- **▶**methenolone
- ►methasterone(17 β -hydroxy-2 α , 17 α -dimethyl-5 α -androstan-3-one)
- **▶**stanozolol
- ▶1-testosterone(17 β -hydroxy-5 α -androst-1-en-3-one)
- ② 외인성으로 투여된 내인성 동화작용남성호르몬스테로이드(Endogenous AAS)
- **▶**testosterone
- 나. 기타 동화작용제 : Clenbuterol
- 2. 이뇨제 : 총 3종

▶hydrochlorothiazide

▶chlorothiazide

▶furosemide

- 3. 흥분제 : 총 3종
 - ►methylhexaneamine(dimethylpentylamine)
 - ▶methylephedrine
- **▶**ephedrine
- ※ methylephedrine과 ephedrine은 소변에 밀리리터당 10마이크로그램보다 많을 경우 금지된다.
- 4. 마약류 : 총 11종
 - **▶**Buprenorphine
- **▶**dextromoramide
- ▶diamorphine(heroin)
- ▶fentanyl 및 유도체 ▶hydromorphone
- **▶**methadone

- **▶**morphine
- **▶**oxycodone
- **▶**oxymorphone

- **▶**pentazocine
- **▶**pethidine

□ 금지방법

○ 도핑검사과정에서 채취한 시료의 성분과 유효성을 변조하거나 변조를 시도 하는 행위(소변 바꿔치기 및/또는 섞기, 이와 유사한 방법 등을 포함한다.)

¹⁾ 생물학적 변환 과정을 통하여 생성된 모든 물질

치료목적사용 면책신청서

치료	목적사용 면책신청서
. 응시자 인적사항	
1. 성명:	
3. 생년월일: 5. 핸드폰:	
. 의료정보 1) 충분한 의료정보를 포함한 진단	·····································
2) 사용 허가된 의약품으로도 치료 가능	÷한 경우, 금지약품을 처방한 임상의학적 정당성을 설명하시오
	등)를 첨부 하여 신청서와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증빙자료에는

- ※ 진단 중빙자료(진단서,처방전,소견서등)를 첨부하여 신청서와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증빙자료에는 포괄적 병력 및 그와 관련된 모든 검사보고서, 검사실 조사 및 영상검사 결과가 포함되어야 한다. 가능한 경우 보고서 또는 편지의 원본에 대한 사본을 첨부하여야 한다. 증빙자료는 임상의학적 관점 에서 극히 객관적이어야 하며, 만약 정확한 설명이 불가능한 경우, 다른 독립된 의료진의 소견도 포함시킬 수 있다.
- 3. 세부 진료내용

금지약물	1회 사용량	사용방법	사용빈도
1.			
2.			
3.			

치료기간 duration of treatment:	1회 □ 응급 □ 기간(주/월)

4. 담당의사 서약

나는 위에서 언급	한 치료와 관련하여	의학적으로 적절하였으며, 금지목록 이외의
대체약물 사용은 위	님 응시자의 의료 상	황에서는 적절하지 않았음을 확인한다.
성명:		_ 전공분야:
주소:		
전화.:	퐥스:	이메일:
서명:	날짜:	

5. 응시자 서약

본인,
고시한 금지약물과 방법의 사용 승인을 요청한다. 나는 나의 의학정보가 시험실시기관,
시료분석기관 및 기타 시험관련 기관에 제공되는 것을 허락한다. 나의 의학정보가 위의
기관에 제공되는 것에 반대한다면 담당의사와 시험실시기관에 그 사실을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하는 것을 이해하고 있다.
서명:날짜:
부모/보호자 서명:날짜:
(응시자가 미성년자이거나 장애로 인하여 서명이 불가능 할 때에는 부모나 보호자가 웅시자와 함께 또는 응시자를 대신하여 서명할 수 있다.)

※ 구비서류가 완료되지 않은 신청서에 대해서는 접수가 불가능하며, 완료 후 재 제출해야 한다. 서류 접수 후 사본을 반드시 보관하시오.

소방공무원 채용시험 신체조건표

부분별	합격기준
체격	양팔과 양다리가 완전하며, 가슴·배·입·구강 및 내장의 질환이 없어야 한다.
시력	두 눈의 맨눈 시력이 각각 0.3 이상이어야 한다.
색각(色覺)	색맹 또는 적색약(赤色弱)(약도를 제외한다)이 아니어야 한다.
청력	청력이 완전하여야 한다.
혈압	고혈압(수축기혈압이 145mmHg을 초과하거나 확장기 혈압이 90mmHg을 초과하는 것) 또는 저혈압(수축기혈압이 90mmHg 미만이거나 확장기혈 압이 60mmHg 미만인 것)이 아니어야 한다.
운동신경	운동신경이 발달하고 신경 및 신체에 각종 질환의 후유증으로 인한 기능상 장애가 없어야 한다.

[※] 기타사항은 「소방공무원 채용시험 시행규칙」(별표3) 「소방공무원 신체검사의 불합격 판정 기준」참고

소방공무원 신체검사의 불합격 판정기준

구 분	· 내 용
1. 일반 결함	가. 예후가 불량한 악성종양 나. 난치의 사상균성 장기질환 다. 난치의 사상충병(휘다리아병·트리빠노쪼마병·일본주혈흡충병) 라. 유효적절한 치료를 받지 아니한 법정전염병으로서 전염성이 없어지 지 아니한 사람
2. 비·구 인후 계통	
3. 치아 계통	가. 진구성인 아래턱관절강직, 음식물을 씹는 근육(저작근)의 질환 및 손 상으로 30mm 이상 입을 벌릴 수 없게 된 사람 나. 아래턱 관절이 탈골되어 다시 맞추기가 곤란하게 된 사람 다. 진구성 복잡악골절 상태가 회복될 가능성이 없는 사람 라. 발음기능 및 음식물을 씹는 기능을 잃은 사람
4. 흉부	가. 전염성 또는 중증 결핵증 나. 소방업무수행에 지장이 있는 급성 및 만성 늑막질환 다. 비결핵성 질환인 중증 만성천식증, 중증 만성기관지염, 중증 기관지 확장증, 중증 폐기종, 중증 활동성 폐진균질환
5. 심장 혈관 순환 계통	및 다. 소방업무 수행에 현저한 지장이 있는 방실전도장에 리. 소방업무 수행에 현저한 지장이 있는 동맥류
6. 복부 ² 및 내 계통	

구 분	내 용
7. 생식 비뇨기 계통	 가. 중증 요실금 나. 진행성 신기능(腎機能) 장애를 동반하여 소방업무수행에 현저한 지장이 있는 신질환(腎疾患) 다. 소방업무수행에 현저한 지장이 있는 활동성 신결핵(腎結核) 또는 생식기결핵 라. 약물 등으로 조절되지 않는 신증후군(腎症候群)
8. 내분비 계통	 가. 중증의 갑상선 기능이상으로 소방업무수행에 현저히 지장을 주는 비가역적인 합병증 나. 소방업무수행에 현저히 지장을 주는 진행성 거인증 또는 말단비대증 다. 현재 치료를 받고 있지 않거나 소방업무 수행에 현저한 지장이 있는 동반질환이 합병되어 있는 에디슨씨병 라. 현재 뇌하수체 기능 장애에 대한 약물(호르몬)치료를 받고 있지 않거나 뇌하수체선종의 기계적 압박에 의한 비가역적인 뇌신경장애 또는 뇌기능장애 등의 합병증 마. 소방업무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주는 당뇨병성 또는 대사질환성 합병증
9. 혈액 또는 조혈 계통	가. 소방업무 수행에 현저한 지장이 있는 치료하기 곤란한 혈우병나. 혈소판 감소성 자반병다. 소방업무 수행에 현저한 지장이 있는 재생불량 빈혈라. 소방업무 수행에 현저한 지장이 있는 용혈성 빈혈(용혈성 황달을 포함)다. 진성적혈구 과다증바. 백혈병
10. 신경 계통	 가. 뇌졸중 등 뇌혈관질환에 의한 소방업무 수행에 현저한 지장이 있는 후유증 나. 중추신경계 염증성질환에 의한 소방업무 수행에 현저한 지장이 있는 후유증 다. 만성 진행성・퇴행성 질환 및 탈수조성 질환(유전성 무도병, 근위축성 측색경화증, 보행실조증, 다발성경화증 포함) 라. 뇌 종양 및 척수 종양 마. 소방업무 수행에 현저한 지장이 있는 외상성 신경질환 바. 소방업무 수행에 현저한 지장이 있는 말초신경질환 사. 전신성・중증 근무력증 및 신경근 접합부 질환 아. 유전성 및 후천성 만성근육질환
11. 사지	가. 소방장비를 사용하는데 지장이 있거나 필기능력이 없는 사람 나. 소방업무 수행에 현저한 지장이 있는 골절·관절 질환자

구 분	내 용
12. 귀	가. 두 귀의 교정청력이 각각 40dB 이상인 사람
13. 눈	 가. 두 눈의 맨눈시력이 각각 0.3 미만인 경우 나. 두 눈의 시야협착이 모두 1/3 이상인 경우 다. 안구 및 그 부속기의 기질성・활동성・진행성 질환으로 인하여 시력 유지에 위협이 되고 시기능에 장애가 되는 질환 라. 중심 시야 20 이내의 복시를 가져오는 안구운동장애 및 안구진탕(眼球振盪) 마. 소방업무 수행에 현저한 지장이 있는 색각이상((색맹 또는 적색약(약도를 제외한다))이 아니어야 한다.
14. 정신 계통	가. 소방업무 수행에 현저한 지장이 있는 정신지체 나. 소방업무 수행에 현저한 지장이 있는 성격 및 행동장에 다. 소방업무 수행에 현저한 지장이 있는 정신병 라. 마약중독 및 그 밖의 약물의 만성 중독자 마. 소방업무 수행에 현저한 지장이 있는 간질
15. 혈압	가. 고혈압 : 수축기 145mmHg을 초과 또는 확장기 90mmHg 초과 나. 저혈압 : 수축기 90mmHg 미만 또는 확장기 60mmHg 미만
16. 운동 신경	가. 신경 및 신체에 각종 질환의 후유증으로 인한 기능상 장애가 있는 경우

<붙임 9>

(앞쪽)

소방공무원	채용	신체	검시	서
-001	711 O			* *

사 진 $(3.5cm \times 4.5cm)$

수험번호	응시분야	성 명	생 년 월 일	※ 압인 또는 계인

			검	사	ዘ 용						
신	장				체		중				kg
건	6		cm		혈		압				
맨눈시 력	좌:	색	색 신 (색 각)				(-	교정)청력	좌:	()
맨군 시 덕	우:	(색					(1	F6/65	우:	()
안 질	환				이비인	후질	환				
치	아				호 흡 :	기 질	환				
간 질	환				신 경	질 :	환				
소 화 기	질 환				피 부	질 :	환				
순 환 기	질 환				정 신	질 :	환				
비뇨기	질 환			7	혈청검 <i>.</i>	사(매5	투)				
흉 부 X 선	검 사				기		타				

위와 같이 검사하였습니다.

의료기관주소 :

년 월

검사자(담당의사)

(서명 또는 인)

검 사 결 과 합 격 여 부	[] 합 격 [] 불 합 격 [] 판 정 보 류	불합격 또는 합격 사유						
판정보류 사유 및 정밀검사 필요 여부	*필요시 소견서 별도 첨부	<u>.</u>						
「소방공무원 채용시험 시행규칙」에 따라 위와 같이 판정하였음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의료기관의 장

전화번호(☎) :

(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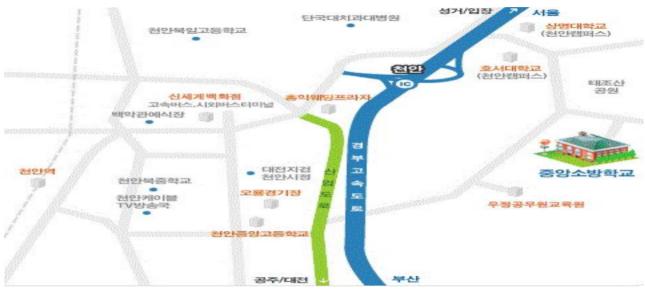
유의사항 및 작성방법

[의료기관]

- 1. 검사내용란에는 검사자가 검사결과를 기재하고 이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 ※ 필수사항: 질병이 있는 경우 합격 또는 불합격 여부와 관계없이 반드시 '질병명' 기재
 - 검사결과 기재 예: 질병명(심부전증, 백혈병, 척수종양 등) 또는 정상, 양호, 이상 없음 등
- 2. 검사결과 합격여부란 등에는 신체검사를 실시한 의료기관의 장이 판정결과 등을 해당 []안에 √표로 표시하고 해당 사유 등을 기재하여야 합니다.
 - ※ 판정보류 사유: 합격 또는 불합격에 대한 판단이 곤란하여 정밀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등
 - 가. 합격사유 기재 예
 - '만성골수백혈병'에 해당하나 글리벡 복용 후 세포유전학적 완전 관해(官解)에 도달하여 정상적인 업무수 행이 가능함
 - '매독(syphilis)' 양성으로 나타나나, 유효적절한 치료로 전염성이 없음
 - '신체검사 불합격 판정기준'에 해당하지 않음
 - 나. 불합격사유 기재 예
 - 두 눈의 교정시력이 좌측 0.1 우측 0.1
 - 혈소판 수가 혈액 1마이크로리터(microliter) 당 6만개 이하인 '혈소판 감소 자색반'으로 업무수행에 상당한 지장이 예상됨
- 3. 검사결과에 대한 판정은 「**소방공무원 채용시험 시행규칙」 별표 3**에 의하여야 합니다.

중앙소방학교 약도 및 시험장 안내

□ 찾아오시는 길



※ 천안역, 고속버스·시외버스터미널 → 중앙소방학교(택시 : 약 15분, 버스 : 51번·52번 버스 약 25분)

□ 시험장소 : ① 인·적성검사(보관 3층 제301호 강의실), ② 체력시험(소방훈련종합센터)



자격요건 검증 등을 위한 동의서

본인은 국민안전처 중앙소방학교에서 시행하는 제23기 소방간부 후보생 선발시험 응시자로서 영어능력검정시험, 자격증 또는 기타 제출한 자료의 진위 검증 등을 위한 확인서 발급에 동의합니다. 또한 본인이 서명·날인한 동의서의 복사본은 자료의 진위 검증을 위해서 원본과 동일하게 유효하다는 것을 인정합니다.

2017년 2월 일

성명: (서명)

중앙소방학교장 귀하